

의안번호	제205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
2023. 11. 17.

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(안)

제	출	자	
예	산	군	수

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(안)

의안 번호	제205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17.

제출자 : 예산군수

제안이유

-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사업 선정 시, 「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」에 따라
- 국비지원금액(7,530백만원) 대비 10% 금액인 780백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금 형태로 발행해야 함
- 이에 따라,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(안)을 제출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예산3리 도새재생뉴딜사업 사업개요

- 사업비 : 30,047백만원(국비7,530 도비1,506 군비7,114, 공기업 13,057, 민간 60, 기금 780)
- 위치 :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일원(111,108m²)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
- 사업내용 : (구)예산군청 행복주택(LH) 조성, 커뮤니티센터, 청년창업소, 돌봄문화종합센터 조성, 노후주택 정비, 주민역량강화교육 등

□ 그동안 추진현황

- 2019. 10. : 예산3리 도시재생사업(주거지지원형) 선정
- 2020. 1. :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
- 2021. 10. : 동행 커뮤니티센터 착공
- 2021. 11. : (구)예산군청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
- 2022. 3. : 예산3리 공영주차장 착공
- 2022. 6. : 예산3리 공영주차장 준공
- 2022. 9. : 동행 청년창업소 착공
- 2022. 12. : 동행 커뮤니티센터 준공
- 2023. 3. : 돌봄문화종합센터 착공, 공영주차장 착공
- 2023. 5. : 예산3리 주민역량강화교육 착공
- 2023. 6. : 노후주택 정비사업(1차) 착공, 공영주차장 준공
- 2023. 7. : 목공작업소 실시설계 용역 착공, 안전안심 등하곶길 조성사업 착공, 노후주택 정비사업(2차) 착공
- 2023. 8. : 목공작업소 실시설계 용역 준공
- 2023. 10. : 노후주택정비사업(1차) 준공, 안전안심 등하곶길 조성사업 준공, 노후주택정비사업(3,4차) 착공, 주민역량 강화 교육 준공

□ 지방채 발행 개요

- 발행근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
 - 행정안전부 「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」
 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제1호
 -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9조(기금의 용도)

- 발행기간 : 2024. 1. ~ 5. ✓ 발행예정일 2024. 1.
- 발행처 : 주택도시보증공사
- 발행금액 : 780백만원 ✓ 돌봄문화종합센터 준공금으로 지출
- 대출금리 : 1.5%
- 상환금액 : 785백만원
 - (이자) 월별상환 780백만원 × 1.5% ÷ 365 × 30~31일 × 5개월=5백만원
 - (원금) 2024. 05월 전액상환
- 상환방법 : 상환금 780백만원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차입금 전액상환

앞으로 추진계획

- 2023. 12. :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회 상정 및 의결
- 2024. 1. : 지방채 발행(주택도시보증공사)
- 2024. 5. : 지방채 상환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**【붙임 1】**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
 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제1호
 - 「주택도시보증법」 제9조 제2호
-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: **【붙임 2】**
- 2024 본예산 확보 계획 : **【붙임 3】**
- 국토부 협의 결과보고서 : **【붙임 4】**

【붙임 1】 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4. 지방채의 차환
5. ~ 6.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□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27조(보조 또는 용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
2.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3. 건축물 개수·보수 및 정비 비용
4. 전문가 파견·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
5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6.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
7.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
8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

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
사전기획비 및 운영비

9.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
10.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·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

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「주택도시기금법」

제9조(기금의 용도)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,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
호의 사업

나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
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

2.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
요한 비용의 출자·투자 또는 용자

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
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

나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
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(토지의 매
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)

다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
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

【붙임 2】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

■ 하반기 선정 배제

○ (부진 사업)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**예산 실적행 실적 부진** 등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신규사업 선정보다 **기존 사업의 관리에 집중**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선정에서 **제외**

- '19년 상반기 기준 실적행률이 20% 미만*인 지자체는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

* 대상 사업 : '16년 선정된 33곳, '17년 선정된 68곳 / 기준 시점 : '19년 6월말 실적행률 계산 방법 : $\frac{\text{'19년 상반기 국비 실적행액}}{\text{'19년 국비 배정액}}$

- (예외)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

** 단, 1개 시·군·구에 복수의 사업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의 실적행액과 국비 배정액을 고려한 총 실적행률이 20%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배제

*** 선정제외 대상 사업 중 '18년도 실적행률이 80% 이상인 경우 선정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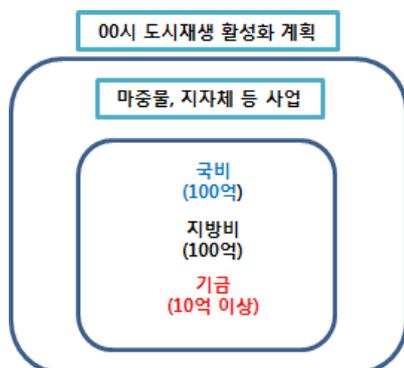
○ (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) 국비 지원액* 대비 기금(도시계정 한정, 17p 참조) 활용금액이 10%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

*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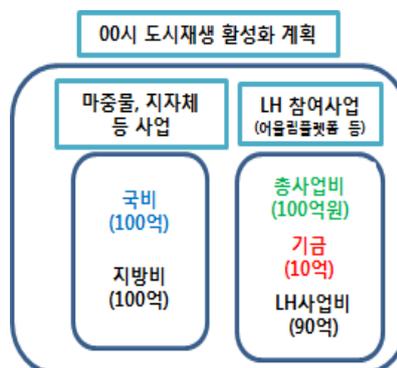
- LH사업이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경우 LH 사업비* 대비 10%이상 기금활용사업(도시계정)을 구성

* LH 재원으로 시행하는 비주택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정

<1. 지자체 등 사업으로 충족하는 경우>



<2. LH 참여사업으로 기금사용을 충족하는 경우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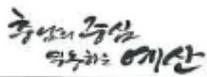
<3. 지자체 등 사업과 LH 참여사업의 합산으로 충족하는 경우>



* (총괄) 사업구성은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으로 자유롭게 구성 (기존사업 추가 또는 신규사업 발굴 등)

** (3번 추가설명) LH사업비의 10%가 국비지원액 10%보다 작은 경우 국비지원액 10%에 상응하는 기금활용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야 함

【붙임 3】 2024년 본예산 확보 계획

		담당자	도시재생 뉴딜팀장	도시건축 과장	산업건설 국장	부군수	군수
		최원정	김현	이영우	최기원	김성호	최재우
문서번호	도시건축과-	협 조					
보존기간	5년	예산팀장 김현 기획실장 이영우					
보고일자	2023. . .						
공개여부	비공개						

-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-
2024년도 본예산 확보 계획

결재요지

○ 2024 본예산 편성(안)

사업명	편성액 (천원)		비고
	계	본예산	
계	985,000	985,000	
	군 200,000	군 200,000	민간위탁금
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	채 780,000	채 780,000	지방채 (주택도시보증공사)
	군 5,000	군 5,000	지방채 이자 상환

○ 예산3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985,000천원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
추진하고자 함



-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-

2024년도 본예산 확보 계획

1 사업 개요

□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

- 위 치 :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일원(111,108㎡)
- 기 간 : 2020년 ~ 2023년(4년, 계속비사업)
- 사 업 비 : 총 30,047백만원(국비 7,530, 도비 1,506, 군비 7,114, 기타 13,897)
- 사업내용 : (구)예산군청 행복주택, 커뮤니티센터, 돌봄문화종합센터, 청년창업소, 노후주택 정비 등

2 그동안 추진현황

- 2019. 10. : 예산3리 도시재생사업(주거지지원형) 선정
- 2020. 01. :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
- 2021. 10. : 동행 커뮤니티센터 착공
- 2021. 11. : (구)예산군청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
- 2022. 03. : 예산3리 공영주차장 착공
- 2022. 06. : 예산3리 공영주차장 준공
- 2022. 09. : 동행 청년창업소 착공
- 2022. 12. : 동행 커뮤니티센터 준공
- 2023. 03. : 돌봄문화종합센터 착공, 공영주차장 착공
- 2023. 05. : 예산3리 주민역량강화교육 착공
- 2023. 06. : 노후주택 정비사업(1차) 착공, 공영주차장 준공
- 2023. 07. : 목공작업소 실시설계 용역 착공, 안전안심 등하굣길 조성사업 착공, 노후주택 정비사업(2차) 착공
- 2023. 08. : 목공작업소 실시설계 용역 준공

3

2024년도 본예산 확보 주요 내용

본예산 요구(안)

- 민간위탁금, 시설비

편성내용	통계목	군비(천원)				비고
		계	본예산	계	본예산	
계			985,000		985,000	
○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	307-05 (민간위탁금)	군	200,000	군	200,000	
○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	401-01 (시설비)	채	780,000	채	780,000	지방채
	311-04 (차입금이자상환)	군	5,000	군	5,000	지방채 이자상환

편성 사유

-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
 - 2019년 하반기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부 조직으로 예산3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0,000천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운영중이었음
 -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,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

-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
 - 2019년 예산3리 도시재생사업 선정 당시 「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」에 근거하여 국비 지원액(7,530백만원) 대비 기금 활용금액 10%이상 반영 의무화 사업 대상이었기에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금 780,000천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운용하고자 함

-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이자
 - 매월 20일 지방채 780,000천원에 대한 이자 1,000천원 상환 예정으로 원금 상환(1회 추경 성립)까지 약 5개월 소요 예정임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 5,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

4 |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

□ 지방채 발행 배경

- 2019년 ‘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’ 공모 선정 당시 「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」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액(7,530백만원) 대비 기금 활용금액 10%이상 반영 의무화 사업 대상임

□ 지방채 발행 개요

- 발행기간 : 2024. 1. ~ 5. ✓ 발행예정일 2024. 01.
- 발 행 처 : 주택도시보증공사
- 발행금액 : 780백만원
- 대출금리 : 1.5%
- 상환금액 : 785백만원
 - (이 자) 월별상환: $780\text{백만원} \times 1.5\% \div 365 \times 30\text{-}31\text{일} \times 5\text{개월} = 5\text{백만원}$
 - (원 금) 2024. 05월 전액상환 계획
- 상환방법 : 원금(780백만원) 상환을 위한 2024년 1회 추경 예산 편성
- 내 용 : 동행 청년창업소 조성사업에 지방채 활용하여 사업 진행(준공금 지출)

□ 근거 법령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제1호
- 「주택도시보증법」 제9조(기금의 용도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원간담회 안건 제출 : 2023. 10.~11.
-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회 상정 및 의결 : 2023. 12.
- 2024년 지방채 발행 : 2024. 1.
- 2024년 지방채 상환(1회 추경 예산 편성) : 2024. 5.

5 예산 집행계획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요구액	집행계획			
	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계	985,000	203,000	782,000	-	-
○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	200,000	200,000	-	-	-
○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(지방채)	780,000	-	780,000	-	-
○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(지방채 이자)	5,000	3,000	2,000	-	-

6 앞으로 추진계획

- 2024. 1. :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급, 지방채 발행

- 2024. 2.~3. : 동행 청년창업소 준공금 지출(기금)
- 2024. 5. : 지방채 상환(1회 추경 예산 편성)

- 붙임 1. 2024년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계획(안) 1부.
2. 민간위탁금 산출 근거 1부.
3. 2024 지방채 발행 계획 1부. 끝.

【붙임 4】 국토부 협의 결과보고서

		담당자	도시재생 뉴딜팀장	도시건축 과 장	산업건설 국 장	부 군 수	군 수
문서번호	도시건축과-	채원경	김희진	서정영	전결	최지권	
보존기간	5년						
보고일자	2023. . .						
공개여부	비공개(5)	협 조					

-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-
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보고

결재 개요

- 일 시 : 2023. 07. 27.(목) 14:30 ~ 15:30
- 장 소 :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청사(5동)
- 참 석 자 : 국토교통부 1인 예산군 3인(예산팀 1, 도시재생뉴딜팀 2)
- 주요내용 : 기금 자체 준비 대체 가능 여부



-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-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보고

◇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(2023.07.27.)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임

1 |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(일생을 행복하게 동행(同行)하는 예산)
- 위치 :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일원(111,108㎡)
- 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, 계속비사업)
- 사업비 : 총 30,477백만원(국비7,530, 도비1,506, 군비7,114, 공업13,057, 기금780, 만10)
- 사업내용 : (구)예산군청 행복주택, 커뮤니티센터, 돌봄문화종합센터, 청년창업소 조성, 노후주택 정비 등

2 | 지방채 발행 배경

- 2019년 ‘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’ 공모 선정 당시 「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」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액(7,530백만원) 대비 기금 활용금액 10%이상 반영 의무화 사업 대상임

3 |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

- 일 시 : 2023. 07. 27.(목) 14:30 ~15:30
- 장 소 :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청사(5동)
- 참석자
 -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경제과 김연우 주무관
 - 예산군 기획실 예산팀 김호연 팀장,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뉴딜팀 하헌진 팀장, 최원정 주무관
- 협의내용
 - 기금 780백만원을 자체 군비로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, 「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기금 활용은 공모 신청 조건이었기에 활용해야하며 미발행 시 추후 공모 사업 신청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.
 - 또한, 기금 활용 의무 대상인 타시군 중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금 활용은 불가피함.

4 | 보고자 의견

- 우리군은 2018년부터 ‘빚 없는 지자체’ 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팀과 협의하여 기금 780백만원을 당해 2회 추경에 자체 군비로 확보하고자 했으나 2019년 하반기 공모 사업 신청 당시 기금 활용은 공모 신청 조건이었기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- 단,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초에 지방채 발행 후, 발행 당해연도 상반기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.

5**향후 추진계획**

-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원간담회 안건 제출(도시건축과) : 2023. 10.
-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회 상정 및 의결(기획실) : 2023. 11. ~ 12.
- 2024년 본예산 승인 : 2023. 12.
- 2024년 지방채 발행 : 2024. 1. ~ 2.
- 2024년 지방채 상환 : 2024. 4. ~ 6.

※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당해연도 상반기 내 (2024.06.)에 조기상환 추진

- 붙임 1.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(일부발췌) 1부.
2. 가이드라인 변경 현황 1부. 끝.

담당자 현황

【기획실장 이덕효, 예산팀장 김호연, 담당자 손신혜 ☎339-7124】